RISE사업단 RISE연구교수 · RISE연구원 임용 특별 규정

제정 2025. 10. 21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사업단(이하 'RISE사업단') RISE연구교수·RISE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- 제2조(적용범위) RISE사업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RISE연구교수·RISE연구원은 상지대학교(이하 '본교') 「연구교수·연구원 임용 규정」과 구분하며, RISE사업의 수행과 성과 달성을 위하여 「RISE사업단 RISE연구교수·RISE연구원 임용 특별 규정」(이하 '본 규정')을 우선 적용한다.
- 제3조(정의) RISE사업단의 RISE연구교수 및 RISE연구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RISE 전임연구원 및 RISE 객원연구원을 모두 'RISE 연구원'이라 한다.
 - 1. RISE연구교수 : RISE사업단에 소속되어 사업관리, 연구 과제 및 강의를 전담하는 사람
 - 2. RISE전임연구원: RISE사업단에 소속되어 사업관리, 연구 과제를 전담 수행하는 사람
 - 3. RISE객원연구원 : 타 기관이나 산업체 등에 재직 중인 자로 RISE사업단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사람
- 제4조(임용자격) RISE연구교수 · RISE연구원의 임용은 〈별표 1〉의 자격 기준에 따른다.
- 제5조(복무) RISE연구교수·RISE연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「교직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
- 제6조(임용절차, 임용기간 및 재임용) ① RISE연구교수·RISE연구원은 RISE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
 - ② RISE연구교수·RISE연구원 희망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RISE사업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이력서 1부
 - 2. 최종학위증명서 1부
 - 3. 경력증명서 1부
 - 4. RISE사업단장 또는 RISE사업단 각 본부장의 추천서 1부
 - 5. 연구참여 실적 및 연구수행 계획서 각 1부
 - ③ RISE연구교수·RISE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재임용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.
 - ④ RISE연구교수·RISE연구원을 재임용할 경우 RISE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제2항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나, 연구참여 실적 및 연구수행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⑤ RISE사업 종료시 임용이 종료된다.
- 제7조(처우) ① RISE연구교수・RISE연구원의 보수는 RISE사업비로 충당한다.
 - ② RISE연구교수·RISE전임연구원은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 - ③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**제8조(역할 및 활용)** ① RISE연구교수는 연구를 전담하되, 본교 강의 시 「강사임용 규정」을 따르며, 최대 2강좌를 초과할 수 없다.
 - ② 타 기관으로의 강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
- 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439, 2025.10.2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급적용) 이 규정 시행 이전 「연구교수·연구원 임용 규정」에 따라 임용된 RISE사업 단 연구교수·연구원은 이 특별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< 별표 1>

임용 및 재임용 자격 기준

구 분	자격 기준
	①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산업체나 기관 경력 3년 이상인 자
연구교수	②석사학위 소지자이며 산업체나 기관 경력 10년 이상인 자
	③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산업체나 기관 경력 20년 이상인 자
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	①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학사학위 소지자로 산업체나 기관 경력 5년 이상인 자

[※] 기관이라 함은 대학, 국가기관, 공공기관, 지자체 등을 의미한다. 다만, 인정되는 산업체나 기관은 종사자 5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자의 우수한 연구 경력과 실적이 증 빙될 때는 50인 이하일 경우도 인정한다.